

상호대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정 2008. 2. 12.

개정 2009. 1. 15.

개정 2009. 4. 16.

개정 2021. 5. 06.

개정 2022. 7. 08.

1. 상호대차협의회 구성

상호대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모든 참여도서관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주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역대표도서관과 전년도 최다 신청 및 제공 각 10개관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 기관이 소집한다.

상호대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정의

(1) 상호대차의 의미

상호대차라 함은 상호대차협회에 참여한 도서관간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른 참여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서로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상호대차 대상 자료의 범위

참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 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 (점자도서, 목 점자 혼용도서, 촉각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자막영상물 등) 등으로 한다.

(3) 참여도서관의 유형

-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포함)
- 지역대표도서관 : 공공도서관 중에서 「도서관법」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에 규정된 도서관을 말한다.
-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에 규정된 도서관을 말한다.

- 작은도서관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병원도서관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병영도서관 :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교도소도서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어린이도서관 :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대학도서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전문도서관 :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각 부처의 행정자료실도 이에 해당한다.
- 학교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상호대차의 방법

- 상호대차는 1차적으로 동일지역(시·군·구)의 도서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청도서관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순으로 그 범위를 계속 확장한다.
-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의 상호대차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운영대행자를 통한 연계 방식으로 실시한다.
- 편의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이용자가 제공도서관을 직접 선정 할 수 있다.

나. 참여도서관의 역할과 의무

(1)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등 제반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 원활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참여도서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
- 상호대차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수시로 관찰하고, 문제발생시 이를 조정·해결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의 상호대차 연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다른 도서관 미 소장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에 참여한다.

(2) 지역대표도서관

- 해당 지역 내 시·군·구 도서관의 상호대차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지역 내 상호대차서비스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한다.
- 지역 내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도서관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 지역 내 공공·장애인·작은도서관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독려한다.
- 참여도서관으로서 상호대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참여도서관

-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등은 자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다른 도서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참여도서관은 자료를 신청하는 신청도서관과 자료를 제공하는 제공도서관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단, 작은도서관과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자료 제공을 유보 할 수 있다.
- 상호대차시스템에 근무일 기준 최소 2회 이상 접속하여 신청 및 제공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 신청도서관은 제공받은 자료가 연체 및 파손, 분실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제공도서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상 및 지불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신청한 자료는 신청인의 자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책나래 연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이라 함은 책나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 회원 인증을 거친 자를 말한다.
- 제공도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자료제공을 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해 불가 처리 한다.
- 휴관·공사·이전·제본 등의 사유로 제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일정기간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상호대차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상호대차운영위원회 운영

도서관간 상호대차에 따른 조정과 협의를 위해 상호대차운영위원회를 둔다. 원칙적으로 모든 참여도서관이 상호대차협의회 총회를 통해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의결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상호대차운영위원회가 대표성을 갖고 최종 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상호대차운영위원회의 구성

- (1) 구성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전년도 최다 제공(정상종료 기준) 1~10위 도서관, 최다 신청(정상종료 기준) 1~10위 도서관으로 한다.
- (2)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이 맡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상호대차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 (3) 「도서관법」에서 정한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한시적으로 공공도서관협의회 지역 지부도서관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 (4) 상호대차운영위원은 각 도서관의 상호대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나. 상호대차운영위원회의 역할

- (1) 지역대표도서관
 - 상호대차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참여도서관간의 상호대차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조정
 - 우수 참여도서관의 기준 마련 및 평가
 - 권역 내 지역도서관의 책임 및 권리의 대변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참여도서관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지관리 협의
 - 기타 상호대차 발전을 위한 제반 분야 연구 및 지원 등

(2) 최다 신청 및 제공도서관

- 상호대차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
- 참여도서관간의 상호대차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 우수 참여도서관의 기준 마련 및 평가에 관한 의견 제시
- 상호대차 실무 관련 정보 공유